

2024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또한 소득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제출기한 : 2025년 1월 31일까지

2. 제출서류 :

(1)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, 관련 증빙서류(반드시 원본제출)

(2) 전근무지가 있는 2024년도 입사자 :

- 전직장 2024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사본가능) ,
-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금액이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는 반드시 원천징수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

(3) 공제항목

-부녀자공제(배우자확인가능한 등본&가족관계증명서) 주택자금공제 등본 필히 제출바랍니다.

3. 제출처 : (06174)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6길 12, 동남유화빌딩 6층 급여담당자 앞

문의사항 : 02)569-5437~9 급여담당자

보통우편 발송시 분실될 경우 책임지지 않으며 수령여부도 확인해드릴수 없습니다

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급여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확인사항

○ 인적공제항목 작성시 반드시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받을 부양가족만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꼭! 소득공제신고서 기본공제란에 동그라미 표시!

인적공제 내용이 전년과동일해도 공제받으실 부양가족분들은 모두 기재하여주시기

바랍니다.(인적사항 기재시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로 작성)

○ 연금·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상의 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저축 소득공제 증명자료상에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를 명확히 기재바랍니다.

○ 월세액·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

「월세액·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」를 제출바랍니다.

○ 국민연금·건강보험·노인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소득공제항목은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기재 안해도 됩니다.

○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2024년도에 근무하셨던 회사에 신청 또는 2025년 5월 세무서에 개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기간만 해당되며 월별금액을 확인할수 있어야 처리가능합니다.

2024년 중도입사자분은 모든서류가 월별금액(단,의료비는 일별금액)이 확인가능한 서류를

보내주시기 바라며 서류작성시 근로소득기간만큼 계산해서 금액을 적어주셔야합니다.

단, 기부금 연금저축은 근로기간 상관없이 공제받을수 있습니다.

○ 소득·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.

↳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,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·세액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.

○(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제공)

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.

1.소득, 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

가. 홈택스 주소 : <http://www.hometax.go.kr>

나. 인증서로 로그인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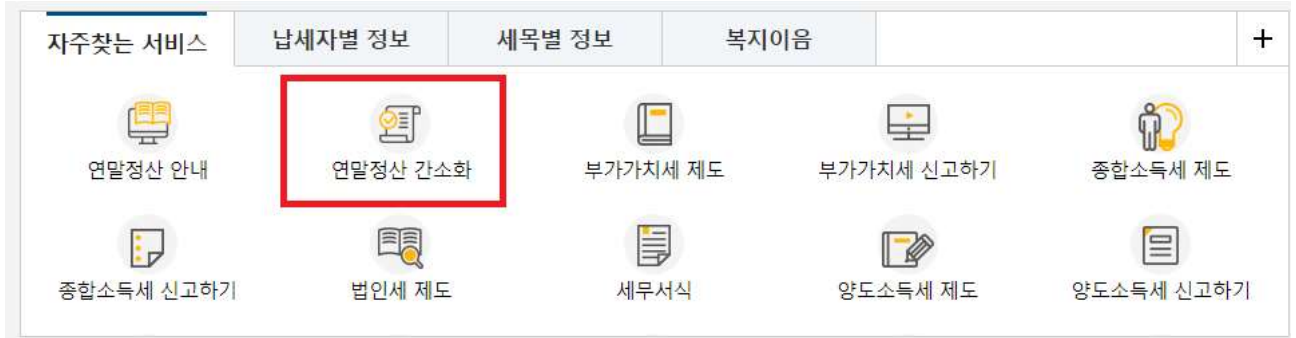
○ 홈택스 첫 화면 상단의 [로그인] 클릭 ⇨ [인증서 로그인] 클릭

○ 인증서 선택 ⇨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⇨ [확인] 클릭

※ 이동전화(휴대폰)에 저장된 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, 비회원로그인(인증서)도 가능

다. 소득, 세액공제자료 조회, 출력하기

○ 홈택스 「조회/발급」에서 「연말정산간소화」를 클릭



○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,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



※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.

○ 중도입사자(퇴사자)등 월별지출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월을 체크하고 조회한다.

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전체선택이 아닌 입사월~12월을 선택 후 각 항목 조회.(의료비는 일별조회)

○ 중도입사자 : 현회사 근무월만 체크 출력한 자료 제출

(예시) 4월 입사자 4,5,6,7,8,9,10,11,12월만 체크. 4월 의료비는 일별조회자료

중도입사자(타회사근무자) : 전현회사 근무월만 체크 출력한 자료 제출

(예시) 전회사 3월까지 근무후 9월 입사 : 1,2,3,9,10,11,12월만 체크, 3,9월 의료비는 일별조회자료

○ 우측상단의 '공제신고서작성'을 선택



○ 근무처 해당없음, 총급여 0으로 진행



○ 부양가족은 대상인원만 추가(비대상인원 제외)

공제신고서 작성하기

Step.01 부양가족 입력
Step.0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

- 현재 조회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대상자리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다.
- 명단에 있는 부양가족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「전년도 부양가족 추가」 또는 「부양가족 추가」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추가하고,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 콧보

부양가족 입력

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

부양가족 추가
전년도 부양가족 추가
선택삭제

| 관계 | 내외국인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| 기본 공제 | 추가공제 | | | | 자녀세액공제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|
| | | | | | | 부녀자 | 한부모 | 경로우대 | 장애인 | 자녀(기본) | 출산입양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소속자 본인 | 내국인 | 이 | 7 -... | N | Y | N | N | N | N | N | N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소속자의 직계존속 | 내국인 | 김 | 4 -... | N | Y | N | N | Y | N | N | N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소속자의 직계존속 | 내국인 | 이 | 4 -... | N | Y | N | N | Y | N | N | N |

※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(나이 및 소득 요건)을 충족하는 경우 <기본공제>를 'Y'로 선택하시고 <추가공제>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

저장 후 다음이동

○ 부양가족까지 입력하였으면 공제신고서 출력

새로 작성하기
공제신고서 수정하기
간편제출하기
연말정산 콧보

기타서류 첨부
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
공제신고서 출력
예상세액 결과보기
설문조사 가기

공제신고서 내용 확인

|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공제 신고서 |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| 월세액-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| 의료비 지급명세 | 기부금 명세 |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
기본사항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|
| 소득자 성명 | 이 | 주민등록번호 | 7 -***** |
| 근무처 명칭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세대주 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세대주 <input type="checkbox"/> 세대원 | 국적 | 대한민국(국적코드 : KR) |
| 근무기간 | 2022.01.01 ~ 2022.12.31 | 감면기간 | ..~.. |
| 거주구분 | <input type="checkbox"/> 거주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거주자 | 거주지국 | 대한민국(거주지코드 : KR) |
|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년과 동일 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 | 분납신청 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|
| 원천징수세액 선택 | <input type="checkbox"/> 120% <input type="checkbox"/> 100% <input type="checkbox"/> 80% | | |

소득·세액공제 한도 보기

인적공제 및 소득·세액공제 명세

| 관계 코드 | 내·외국인 구분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| 기본 공제 | 부녀자 | 한부모 | 경로우대 | 장애인 | 자녀 | 출산입양 | 자료구분 | 건강보험료 | 고령보험 |
|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
○ 출력시 팝업창은 '취소'를 선택하여 주민번호등을 표시하고, 작성방법은 '제외' 선택

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a web application interface. At the top, there is a confirmation dialog box with the following text:

hometax.go.kr 내용:
정보보호를 위하여 공제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, 성명, 계좌번호(증권번호) 일부에 *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
주민등록번호,성명,계좌번호(증권번호)의 일부를 *표시 하시겠습니까?
ex) 확인버튼 클릭시 : 820224-***** , 김*** , 087002*****
취소버튼 클릭시 : 820224-1111111 , 김영희 , 087002215555

At the bottom of the dialog box, there are two buttons: "확인" (Confirm) and "취소" (Cancel). The "취소"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rectangle.

Below the dialog box, there is a light blue banner with the text: "맞는지 확인하시고 「예상세액 결과보기」 에서 소득 · 세액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F로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"

At the bottom of the page,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several buttons: "새로 작성하기", "작성방법 제외", "작성방법 포함", "기타서류 첨부", "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", "공제신고서 출력", and "예". The "작성방법 제외"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rectangle.

1.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

□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(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표준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, 근로소득세액공제)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

-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.

《(예시)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》

|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| 독신 (본인) | 2인 가족 (본인, 배우자) | 3인 가족 (본인, 배우자, 자) | 4인 가족 (본인, 배우자, 자2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간 총급여액 | 1,408만원 이하 | 1,623만원 이하 | 2,499만원 이하 | 3,376만원 이하 |

*예) 2인 가족(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)은 총급여 1,623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 없음

※ 국민연금, 고용보험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 납부 전제

□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%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,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%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·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.



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요건표



| 구분 | 공제요건 | | | | 비고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나이요건* | 소득요건* | 동거요건 | | | |
| | | | 주민등록동거 | 일시퇴거 허용 | | |
| 기본공제 | 본인 | × | × | × | | |
| | 배우자 | × | ○ | × | | |
| | 직계존속 | 60세 이상 | ○ | 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 | 1964.12.31. 이전 | |
| | 직계비속, 동거입양자 | 20세 이하 | ○ | × | 2004. 1. 1. 이후 | |
| |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| × | ○ | × | | |
| | 형제자매 | 60세 이상 20세 이하 | ○ | ○ | ○ | 1964.12.31. 이전 2004. 1. 1. 이후 |
|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| × | ○ | ○ | ○ | |
| | 위탁아동 | | ○ | | | |
| 추가공제 | 장애인 |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| | | | |
| | 경로우대 |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| | | 1954.12.31.이전 | |
| | 부녀자 |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 | | | | |
| | 한부모 |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자 | | | | |
| 연금보험료 공제 |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| | | | | |

* **나이요건**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 * **소득요건**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

| 구분 |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| |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| 비고 |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나이요건 | 소득요건 | | | |
| 특별 소득공제 | 보험료 |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(건강·노인장기요양·고용보험료) | | | |
| | 주택자금공제 | - | - | ○ | 본인만 가능 |
| 그 밖의 소득공제 | 개인연금저축 |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 | | | |
| | 주택마련저축 |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| | | |
| | 신용카드 등 | × | ○ | ○ | 형제자매 제외 |
| 자녀세액공제 (8세이상) | ○ | ○ | - | 기본공제대상 자녀 (입양자·위탁아동·손자녀 포함) | 2016.12.31. 이전 |
| 연금계좌세액공제 |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 | | | | |
| 특별 세액공제 | 보장성보험료 | ○ | ○ | ○ | |
| | 의료비 | × | × | ○ | |
| | 교육비 | × | ○ | ○ | 직계존속 제외 *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, 직계존속도 가능 |
| | 기부금 | × | ○ | × | 기본공제대상자 * 정치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|
| 표준세액공제 | 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 | | | | |